

# 석유대체연료 제조·수출입업 [ ] 등록신청서 [ ] 조건부 등록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14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대표자 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)			
	주 소				
	상 호	전화번호			
	소재지				

신청 내용	제조시설	시설명	제조능력	소재지	착공예정일	완공예정일
		저장시설	저장제품	총규모(기 수)	소재지	착공예정일
	제조유종(油種)	수출입유종 (油種)	사업개시일		최초 통관예정일	
			년 월 일		년 월 일	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32조제1항·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·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 제조·수출입업 [ ]등록 [ ]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##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	수수료
1. 사업계획서 1부 2.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서 1부 (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시만 해당합니다)	법인 등기사항증명서 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없음

\* 신청내용 중 제조시설의 기재사항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.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### 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 및 제출	→	접 수	→	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	→	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	→	등록증 작성	→	등록대장 기재	→	등록증 발급
신청인		한국 석유관리원		한국 석유관리원		산업통상자원부 (석유산업과)		산업통상자원부 (석유산업과)		한국 석유관리원		